복권위원회

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시작
함께 사는 기쁨

LH콜센터 1600-1004

LH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LH청약센터로 이동

주거복지로드맵

2021. 3. 22

함께 만드는 시작 · 함께 사는 기쁨

LH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2021. 01. 05(화) 부터
2021. 12. 31(금) 까지

국토교통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제도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보호종료아동(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구해오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지역 전국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만 19~39세 · 대학생 · 취업준비생**(혼인중인 자는 제외)

만 19~39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 학 생 2021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능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2021년도 졸업예정자 · 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취업준비생**

대학생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2021년 공시대상대학에서 확인가능

취업준비생 졸업 · 중퇴 학교 인정 기준

| 대학교 인정 기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단,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은 제외

| 고등 · 고등기술학교 인정 기준 |

1.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2. 「초 · 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3. 「초 · 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4. 「초 · 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5. 고졸검정고시 등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

※ 단,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신청절차

전세보증금 지원가능 주택면적 및 지원한도액

구분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용면적)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	60㎡ 이하	12,000만원/호	9,500만원/호	8,500만원/호
셰어형	2인	70㎡ 이하	15,000만원/호	12,000만원/호	10,000만원/호
	3인 이상	85㎡ 이하	20,000만원/호	15,000만원/호	12,000만원/호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하고,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단, 남매는 허용)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 (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가능),
2회 재계약 이후 아래 재계약기준을 충족할 시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가능

※재계약기준

2회를 초과하여 재계약 체결 시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 충족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입주 후 혼인한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00만원

월임대료

❶만 20세 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 무이자
❷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❸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연 1.0%	연 1.5%	연 2.0%

※우대금리 적용
≫청년 1순위 0.5%p(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는 1.0%)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월세를 내는 임대차계약 방식)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 보증(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대체가능

예시(수도권)

(만 20세 초과)**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이
전세보증금 12,000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 임 대 료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2.0%(연) × 50% 감면 ÷ 12개월]
= [(12,000만원 - 100만원) × 2.0%(연) × 50% 감면 ÷ 12] = **99,166원**

(만 20세 초과)**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이
전세보증금 7,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로 임차한 경우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수도권 월세 25만원이므로,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가능)

| 임대보증금 | 175만원(기본 100만원+3개월 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 월 임 대 료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2.0%(연) × 50% 감면 ÷ 12개월]
= [(7,000만원 - 175만원) × 2.0%(연) × 50% 감면 ÷ 12개월]] = **56,875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 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보증부월세** :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월세를 내는 임대차계약 방식
※**임차료 지급 보증**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신청기간

2021. 01. 05(화) 16:00~
2021. 12. 31(금) 18:00 **연중 상시 신청**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홈페이지(https://lh.or.kr)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과 관련서류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소요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안내

LH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싶으세요?

| 전세임대 문의처 |

지역본부	관할지역	문의처
LH콜센터		1600-1004
전세임대 통합 콜센터		1670-0002
서울본부	서울·경기북부	1670-2591 (문자상담 가능, 45자 이내로 제한)
경기본부	경기남부	1670-2592
인천본부	인천·경기서부	1670-2593
부산울산본부	부산·울산	1670-2581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	1670-2582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	1670-2598
대전충남본부	대전·세종·충남	1670-2586
강원본부	강원	1670-0002
충북본부	충북	043)901-4564
전북본부	전북	1670-2596
경남본부	경남	1670-2583
제주본부	제주	064)720-3938, 1036

※ **경기북부** :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 **경기남부** :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 **경기서부** : 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

언제·어디서나·누구나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포털
jeonse.lh.or.kr